1.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가. 세액공제, 세액면제 또는 감면분에 대한 과세표준：14,000,000 11,000,000＋3,000,000 ＝14,000,000 나.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과세표준：0 다. 조세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4,000,000×20%＝2,800,000 ※ 조특법상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손금산입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.